

【 10 】 양주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8. 4.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정이유

-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비치,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6조)
-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9조)

-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 (안 제10조)
-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 (안 제13조)

###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 별표4의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

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퇴비·사료·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배출요령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동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 배출장소 · 배출용기 ·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15조 제1항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 · 사료 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퇴비 사료로 재생이 용하는 농 · 축산농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 ·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퇴비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와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별표1&gt;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 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들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li> </ul>

&lt;별지1호서식&gt;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제6조 관련)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	------------------------------

-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물 : 객석·객석 합계면적 : m<sup>2</sup>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sup>2</sup>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m<sup>2</sup>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kg/월	부산물발 생량 kg/월	처리방법
자 가 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 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양주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제6조 관련)						
사업장명 :		(단위 : kg)				
년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누 계

### 〈작성요령〉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lt;별지3호서식&gt;

음식물쓰레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 (제6조 관련)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물 : 객석·객석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단위:kg)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부 산 물 처 리						
재활용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방 법	업체명	업 종
						주소 전화
부 산 물 처 리						
양주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양주군수 귀하						